공 개

의안번호	제 58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1. 28. (제 2 차)

의결사항

서민금융진흥원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1. 28.

1. 의결주문

서민금융진흥원이 인가 신청한 **「서민금융진흥원 정관 일부변경안」**에 대하여 **별지와 같이 인가**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*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인가 신청한 **「서민금융진흥원 정관 일부변경안」**을 **별지와 같이 인가**하고자 함

* 서민금융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3. 주요골자

□ **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**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**정부 방침***에 부응하여, **노동이사 선임** 및 **임기**에 관한 근거 조항을 서민금융진흥원 **정관에 신설**

* 국정과제 18번(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) 中 "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 추진"

○ **(안 제29조제3항)** 비상임이사에 **근로자대표**의 추천 또는 **근로자 과반수**의 동의를 받은 사람 **1명**을 포함하는 내용* 신설

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공공기관운영법') 제26조제3항 준용

○ **(안 제29조제5항)** 노동이사의 **추천 및 동의 절차**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**별도의 규정**으로 정하는 내용* 신설

*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7항 준용

○ **(안 제30조제3항)** 노동이사가 서민금융진흥원 소속 **근로자 지위를 상실**하는 경우 **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**하는 내용* 신설

*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 제47조의8제3항 준용

< 참고: 공공기관운영법 및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관련 조항 >

■ **공공기관운영법**(2026.1.2. 시행)

제26조(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)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(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,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*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
* 근로자대표:「근로기준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의미(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제3항제2호)

⑦ 제3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**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**(2025. 3. 21. 개정)

제47조의8(임기) ③ 노동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 등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노동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.

4. 시행일 : 금융위원회 정관 변경 인가일

5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<참고1>

나. 관계법령 : <참고2>

< 별지 >

서민금융진흥원 정관 일부변경안

서민금융진흥원의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제29조에 제3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의 이사에는 3년 이상 재직한 진흥원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(이하 “노동이사”라 한다)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⑤ 노동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노동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 등 진흥원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노동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참고 1>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임원의 임면)	**제29조(임원의 임면)**
①·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제2항의 이사에는 3년 이상 재직한 진흥원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(이하 "노동이사"라 한다)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노동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30조(임원의 임기)	**제30조(임원의 임기)**
①·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노동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 등 진흥원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노동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.
부칙	**부칙**
<신 설>	이 정관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참고2> 관계법령

□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제7조(정관)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14. (생 략)

② 진흥원은 **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**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**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**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614